
Policy and Law Report _Vol.15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04 ~ 10.10) -

October 11,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u>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u>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대한 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 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GMP 위반 정도에 따른 GMP 적합판정에 대한 처분 양형 마련 -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 ②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의 세부 절차 마련 -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기간·인력 등 조사 일정(7일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사유·일자)를 알리도록 규정 * 다만, 증거인멸 등 우려 시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보 가능 ③ GMP 조사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등 마련 -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훈련 과정·내용, 인력·운영조직·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 규정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제조·수입·판매·관련 법인(제약협회 등 약업단체), 의약품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 ④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체계 개선 - 현재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식약처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	2022-09-30
금융 위원회	• <u>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u>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탁업 혁신방안 - (신탁가능 재산 확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 추가	2022-09-30

부처	내용	일시
	* 현재 7가지 재산(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만 가능 - (수익증권 발행 허용)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하여 신탁재산(금전, 보험금 청구권 외) 수익증권 발행 허용 및 규율 정비 - (상품 다양화) 고령화시대에 맞는 보다 다양한 상품 출현 지원 ②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장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완화 - (소형 비상장사 감사)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부담을 보다 완화 - (회계지원센터)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 지원하는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 (KRX 內) ③ 상장폐지 제도 개선 - (실질심사 확대)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 계속 가능성, 경영투명성 등 고려, 신중한 상폐여부 결정 유도 - (이의신청 확대)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 유도 - (상폐요건 합리화) 주가미달 등 다른 상폐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 완화 ④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 합리화 -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Net Capital Ratio) 위험값 완화	
	•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자문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의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도 투자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세제적격성이 인정되는 연금저축펀드*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개인의 책임하에 운용이 이뤄짐 *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하는 사적연금으로,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그러나, 개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최근 시장상황상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수 있음. 연금저축펀드 가입자 개개인이 겪는 운용상 어려움 등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저축펀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2022-10-07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임·자문계약 연계형 연금저축펀드의 세제적격성 인정 (현행) 현재 소득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체결한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단,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 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 하는 경우에는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 이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고자 함 -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임·자문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②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 허용 (현행) 현재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집합투자증권)의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 이 때문에,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 퇴직연금에서는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가 가능한 상황 (개선) 금융위원회는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함	
관세청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발표 관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함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22.상반기)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를 담음	2022-10-05

부처	내용	일시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table><tr><td rowspan="4">국민편의 제고</td><td> 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td></tr><tr><td> ②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신고일자·개인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 </td></tr><tr><td> ③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 납부(가상계좌 제공), 반품시 세금 환급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 구축 </td></tr><tr><td> ④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td></tr><tr><td rowspan="5">소비자 보호</td><td> ⑤ 명의도용 피해 방지 -플랫폼에서 해외직구시, 플랫폼의 ‘고객 가입정보’와 관세청의 ‘개인관고유부호 발급정보’ 일치 여부 검증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추가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td></tr><tr><td> ⑥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조사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신규 도입 -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 </td></tr><tr><td> ⑦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식·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체화 및 협업검사 강화 -해외직구 제한 식·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 </td></tr><tr><td> ⑧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 </td></tr><tr><td> ⑨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 신속통관 </td></tr><tr><td rowspan="3">전자상거래 수출 지원</td><td> ⑩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개(인천·평택·김포)에서 전국 34개로 확대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td></tr><tr><td> ⑪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 추진 * 대(對)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 </td></tr><tr><td> ⑫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td></tr></table>	국민편의 제고	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②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신고일자·개인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	③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 납부(가상계좌 제공), 반품시 세금 환급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 구축	④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소비자 보호	⑤ 명의도용 피해 방지 -플랫폼에서 해외직구시, 플랫폼의 ‘고객 가입정보’와 관세청의 ‘개인관고유부호 발급정보’ 일치 여부 검증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추가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⑥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조사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신규 도입 -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	⑦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식·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체화 및 협업검사 강화 -해외직구 제한 식·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	⑧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	⑨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 신속통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⑩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개(인천·평택·김포)에서 전국 34개로 확대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⑪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 추진 * 대(對)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	⑫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2022-10-05
국민편의 제고	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②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신고일자·개인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																
	③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 납부(가상계좌 제공), 반품시 세금 환급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 구축																
	④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소비자 보호	⑤ 명의도용 피해 방지 -플랫폼에서 해외직구시, 플랫폼의 ‘고객 가입정보’와 관세청의 ‘개인관고유부호 발급정보’ 일치 여부 검증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추가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⑥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조사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신규 도입 -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																
	⑦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식·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체화 및 협업검사 강화 -해외직구 제한 식·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																
	⑧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																
	⑨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 신속통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⑩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개(인천·평택·김포)에서 전국 34개로 확대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⑪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 추진 * 대(對)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																
	⑫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부처	내용		일시
		⑬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지자체(부산시)와 협업하여 해상특송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사업을 경인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	
		⑭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수출 유망품목·국가 선정 등에 유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⑮ 韓-中 복합운송 활성화 -자국에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채 별도 하역·적재 없이 동일 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하여 바로 환적하는 육·해·공 복합운송 추진			
제도·인프라 정비	⑯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 마련		
	⑰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전자상거래 유형, 주문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목록통관 신고항목 개선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제도’ 신설		
	⑱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축 완료(’23.9)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설치 적극 검토 -경남권역: 부산세관 권역을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⑲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마약 탐지장비 도입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고해상 복합 엑스레이 등 첨단기술·장비 개발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ray) 성능 강화 및 현장 본격 배치		
	⑳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재고물품을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주문 취소된 해외직구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에 반입한 후 해외 재판매 하도록 허용		

제도·인프라
정비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10.4. 시행) 현부실채권의 효율적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 투자기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2022-10-0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0.4. 시행)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등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 필요성이 있는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2-10-04
금융 위원회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0.4. 시행) 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사유를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취득한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구상채권의 매각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2022-10-04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7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 이에 따라 법령정비의 요청 절차와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확대 (안 제8조의2 제5항, 제6항) -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사전검토위원회의 인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함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 (안 제42조의5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③ 법령정비 요청 및 처리 절차 신설 (안 제42조의5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 제12항, 제13항) - 법령정비 요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 결과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하였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④ 법령정비요청자의 임시허가 신청 절차 신설 (안 제42조의5 제9항, 제10항)	2022-10-0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은 법령정비요청자의 임시허가 신청 기간 및 절차를 구체화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청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⑤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 발급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간주 기간 구체화 (안 제42조의5 제5항, 제11항)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정비요청자로 하여금 연장되는 유효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함 ⑥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에 따른 위탁업무 등 정비 (안 제42조의7제1항, 제43조제3항) - 법령정비요청제도의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 범위를 확대함 ※ 의견 제시기간 : 10/5(수)~11/1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산업제도과)로 제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요청권과 임시허가 전환 등에 관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법률 제1887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 이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의 위임규정을 정비함 (안 제11조, 별지 제15호)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12조, 별지 제16호) ③ 법령정비 요청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13조, 별지 제17호) ④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14조, 별지 제18호) ⑤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15조, 별지 제19호) ※ 의견 제시기간 : 10/5(수)~11/1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산업제도과)로 제출	2022-10-0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권한을 징수권자(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징수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결손처분시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선부담금 계산식에 적용하는 지역계수 중 가중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부과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선부담금 결손처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 (안 제28조제1항 제6호 신설) ② 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등의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안 제29조제3호 신설) ③ 개선부담금 계산식에 적용하는 지역계수를 가중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인용법률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7) ※ 의견 제시기간 : 10/5(수)~11/1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로 제출	2022-10-07
국토교통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21.6)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의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 (안 별표1 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의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10/4(화)~11/1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지원팀)로 제출	2022-10-0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사업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설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현실화 (안 제13조제1항제2호) -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정함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하고자 함 ②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 (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허용 특례 인정범위를 “1회 한정”으로 하던 것을 “1개 업종 한정”으로 확대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중복허용 특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경영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 (안 별표 2 제2호파목) -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됨에 따라 시공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시공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설비업계(전기, 통신, 소방, 가스)와 같이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 ④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 (안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 부실업체 시장진입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을 상시근무 하는 사람으로 정함에 따라 일과 후에 영업활동을 일체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인정하여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의견 제시기간 :10/4(화)~11/1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로 제출	2022-10-0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되었음에도 별지서식에 ‘하도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 (안 별지서식 제22호의6) -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19. 3. 26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서식에서 ‘하도급 금액’을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②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식 변경 (안 별지서식 제19호 및 제31호) -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신청하던 것을 ‘생년월일 및 사업장소재지’로 변경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10/4(화)~11/1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로 제출	2022-10-0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21.6)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의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 (안 별표 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의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10/5(수)~11/1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로 제출	2022-10-0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u>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 제품의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 제시기간 :10/7(금)~11/18(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제출	2022-10-0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두 기업이 가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2022-09-30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3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분야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은 이러한 새로운 인터넷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의 소외는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 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데 있어서도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3 신설)	2022-09-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이와 더불어 인터넷 사이트의 불법 링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도 증가하여 디지털 콘텐츠시장 성장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불법복제물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국내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IP주소를 두고 있는 사례가 많아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조치로는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24조 및 133조의2 등)	2022-10-04
국토교통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불법, 부실검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간검사소 검사품질 확인을 위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와 검사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자동차검사 역량평가가 국내에 도입돼 2020년부터 시행 중임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는 검사품질 관리 및 역량 향상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지도점검 활용 등 역량평가 결과의 활용이 어렵고, 민간검사소의 컨설팅 참여가 저조하여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자동차검사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비해 민간검사소의 검사 부적합률이 여전히 낮고 부실검사 업체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민간검사소 검사품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지자체의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처분만으로는 부실검사를 예방하거나 검사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함 이에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및 컨설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자에게는 지도상담 및 기술지원을 시행하거나, 중대한 결함 발생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끔 하며, 정당한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의 안착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검사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안 제45조의3 신설 등)	2022-10-04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정감사 (계속)	10/4(화) ~ 10/24(월)	<u>국정감사 종합일정표</u>	
농해수위	10/12(수) 15:00	안전조정위	- 법안 심사
국회도서관	10/11(화)	최신이슈 제13호 - 인플레이션 감축법	
	10/12(수)	「World & Law」 2022-19호 발간 - 온라인 플랫폼 광고,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닐까?	
	10/13(목)	「현안, 외국에선?」 제45호 발간 - 일본의 수해대책으로서의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의무화	
입법조사처	주중	「이슈와 분석」 발간 -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55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예산정책처	10/5(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발간 I. 지출 부문 II. 성장 및 금융 부문 III. 생산 부문 IV.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	
입법조사처	10/4(화)	「NARS 현안분석」 발간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0/4(화) 13:30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 - 한국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수출·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윤창현 의원실, 한국경제신문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5(수) 14:00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의 첫 열매	김두관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0/5(수) 14:00	지역 대개조,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채익 의원실,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5(수) 14:00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윤주경, 김희곤, 김종민,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최유리 변호사 |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